

case
9

베어링 셀

요약

사례명	베어링 셀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5135 (2025.11.10.)
사실관계	중국산 강판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에서 절단, 가공, 그루빙 등의 공정을 통해 최종 제품인 베어링 셀을 생산(필요한 경우 한국산 하우징에 삽입)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강판은 한국에서의 절단, 가공, 그루빙, 드릴링 공정을 통해 평축 베어링으로 기능하는 셀로 명칭, 성질 및 용도가 모두 변화하므로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베어링 셀이 하우징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셀을 하우징에 삽입하는 것은 단순 공정에 불과하나, 하우징의 원산지 또한 한국이므로, 하우징이 포함된 베어링 셀의 원산지 또한 한국임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⁸⁾

사 례 명 [베어링 셸]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5135 (2025.11.10.)

사실관계

요청자	Hansung Co., Ltd.	
제품명	• Bearing shells (부품 번호: HFZLQ18-200, HFNLK22-225, HFNLB28-280)	
제품 구성	• 각 셸은 두 개의 반원통형 구조(상부 및 하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샤프트 또는 액슬이 셸의 중심 보어에 삽입되면 그 표면을 따라 오일이 순환하는 구조임	
용도	• 전동기, 발전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제조과정



상세공정

1. 중국산 강판을 한국으로 수입
2. 한국 제조 공정
 - (1) U자형으로 레이저 절단
 - (2) 측면, 내부, 외부 표면이 동심 정렬을 이루도록 기계 가공
 - (3) 그루빙 공정을 통해 윤활유 경로 형성
 - (4) 드릴링 공정을 통해 상·하부 섹션을 고정할 수 있는 구조 형성
 - (5) 완성된 상·하부 섹션에 도금 처리
 - (6) 다웰 핀과 볼트를 사용하여 상·하부 체결
 - (7) (하우징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 하우징에 베어링 셸 삽입 및 회전 방지 핀으로 고정
3. 각 베어링 셸 검사 후 포장

8)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및 추가 관세에 따른 현행 무역구제조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 중공산 강판은 한국에서의 절단, 가공, 그루빙, 드릴링 공정을 통해 평축 베어링으로 기능하는 셸로 명칭, 성질 및 용도가 모두 변화하므로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 ☑ 베어링 셸이 하우징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셸을 하우징에 삽입하는 것은 단순 공정에 불과하나, 하우징의 원산지 또한 한국이므로, 하우징이 포함된 베어링 셸의 원산지 또한 한국임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베어링 셸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한국임

Ⅲ 시사점

- 강판과 같은 반제품을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산업용 혹은 공업용 제품으로 가공하는 공정이 일국에서 수행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가능함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5135 (2025.11.10.), <https://rulings.cbp.gov/ruling/N355135>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